

의안번호	2211147
의 퇴 인	이인선의원
회 답 일	2025.8.22.
추계번호	25D3497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1항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	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, 상담소등에의 상담 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9조제5항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	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스톱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(이하 “관할경찰관서”라 함)의 장에게 통지	의무규정
3	안 제11조제4항(잠정조치의 변경 등)	법원은 잠정조치의 취소,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	의무규정
4	안 제11조제5항(잠정조치의 변경 등)	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제1항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제5항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	
3	안 제11조제4항(잠정조치의 변경 등)	
4	안 제11조제5항(잠정조치의 변경 등)	

2. 상세 사유

□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요양시설 위탁 및 상담위탁(안 제9조제1항)

-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 위탁하거나 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하는 등 잠정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통지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
- 한편,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의료기관·요양시설 위탁 및 상담소 위탁의 경우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잠정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여부를 현 시점에서 확인하기 어려움
 - －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8조¹⁾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참고로, 현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현행법 제9조제1항제1호~4호에 따라 서면경고(제1호), 접근금지(제2호),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(제3호), 전자장치 부착(제3의2호),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(제4호) 등의 잠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 중 전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된 2025년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전자감독 예산 내역: 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세부사업	예산
전자감독	전자감독·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	10,081
	전자감독·신상정보 등록 운영	6,456
	장치 및 시스템 관리	19,201
	사업지원경비	1,109

자료: 대법원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

□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의 변경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시 통지(안 제9조제5항, 제11조제4항, 제11조제5항)

- 개정안은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취소·변경할 때에는 관

1)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8조(비용의 부담) ①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가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
- 환경경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또한 개정안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시 관할경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잠정조치 취소·기간의 연장·종류의 변경 건수,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건수의 추정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 - 통지의 경우 현재 우편송달(1건당 5,280원)을 통해 이루어지고, 2025년 10월 10일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으로 전자적 방법의 송달이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
 - 2021~2024년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4] 잠정조치 결정 건수: 2021~2024년

(단위: 건)

구분		2021.10.21. ~12.31.	2022	2023	2024
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건수	청구	1,045	7,765	9,766	11,055
	인용	959	7,224	9,053	10,125
	기각	49	494	709	841

자료: 대법원 사법연감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참고로, 2020~2024년 연도별 형사일반사건 송달료 예산은 다음과 같음

- 형사일반사건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가 포함되며, 각 사건에 대해 별도로 송달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

[표 2] 형사일반사건 송달료: 2020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
형사일반사건 송달료	6,445	7,704	5,360	5,518	5,777

자료: 대법원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